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(노원구 공릉동 617-3번지 외 2필지)

의안 번호	8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「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」의 4대 분야 가운데 ‘살자리’ 대책의 일환으로서 “역세권 2030 청년주택”을 도입함.
- 나.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제한적인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임.
- 다. 용도지역 변경 등은 기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.
- 라. 이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17-3번지 외 2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(안)

대상지 위치	구 분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노원구 공릉동 617-3번지 외 2필지	계	1,456.7	-	1,456.7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1,456.7	감)1,456.7	0.0	
	일반상업지역	-	증)1,456.7	1,456.7	

나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제3종일반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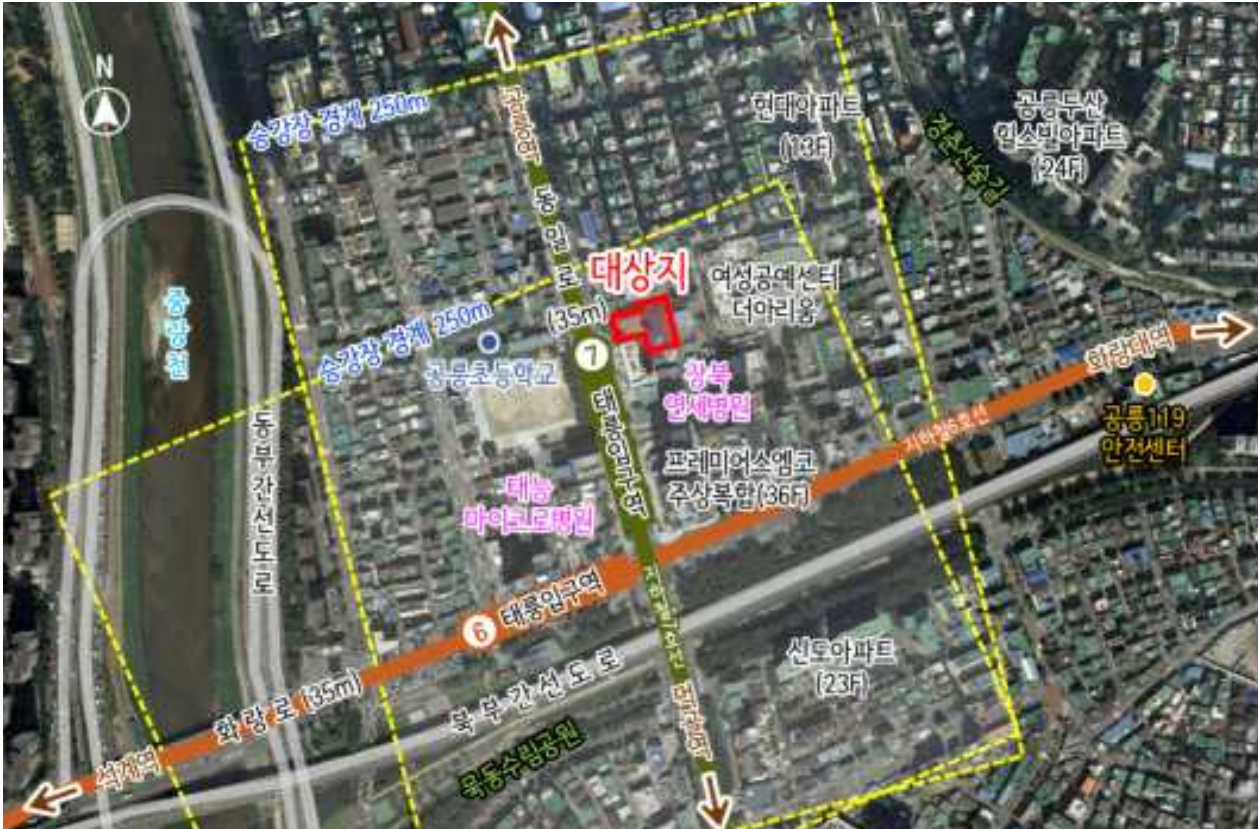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 1부.

※ 작성자: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한의성(☎ 2133-493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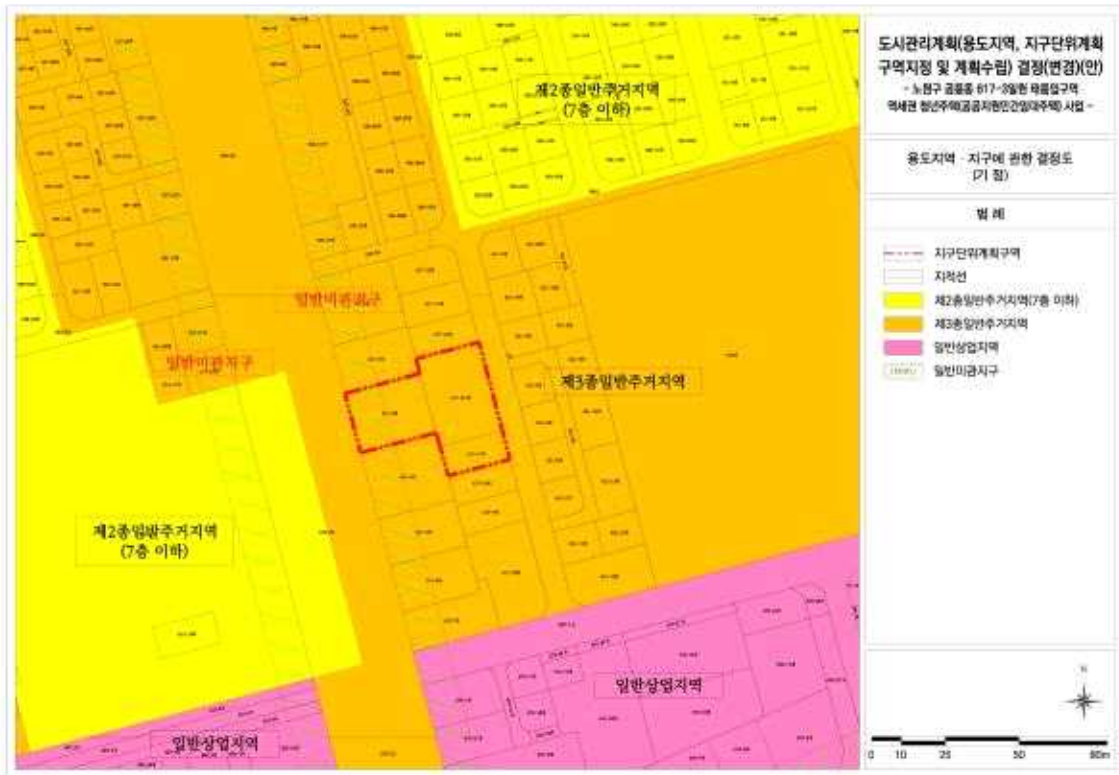
붙임 **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**

□ **위치도**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

○ 기 정



○ 변경

